

의안번호	제 329 호
의 결 연 월 일	2009년 3월 일 (제 278 회)

충청북도 국제민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심홍섭 의원외 6 인
발의연월일	2009년 3월 17 일

충청북도 국제민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홍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9
----------	-----

발의연월일 : 2009. 3. 17.

발의자 : 심홍섭·이영복·박종갑·
권광택·박영웅·송은섭·
민경환

1. 제안이유

충청북도의 국제화 촉진과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내에 소재한 국제민간기구를 지원하고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가. 국제민간기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종류의 규정(안 제3조)
- 나. 사업수행경비를 지원받기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 명기(안 제4조)
- 다. 사업 완료 또는 추진기간 만료시 사업수행자가 제출해야 할 정산보고서 명기(안 제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예산조치 : 자체 세부계획수립시 재원확보
- 다. 관련부서 협의 : 경제통상국 국제통상과 협의됨
- 라. 규제관련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국제민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국제화 촉진과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내에 소재한 국제민간기구를 지원하고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제민간기구”는 다음 각 호 모두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다양한 문화권을 대표하는 회원으로 구성
2.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국제기구와 연관된 목적사업 수행실적
3. 외교통상부산하 국제민간단체로서의 법적지위 획득

제3조(지원사업)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제민간기구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제회의 개최사업
2. 국제기구와 관련된 협력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계획서 제출) ① 국제민간기구는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도의 지원금과 자체부담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정산보고) ① 국제민간기구는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추진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내용,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정산보고서를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출된 정산보고와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비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업비 지원과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및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을 각각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기일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사무의 위임)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등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사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소속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무의 위임)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무중 당해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를 소속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의 접수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 (보조금의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사업계획서 제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당해 회계연도 3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보고서 제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업비"라 함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소요되는 인적·물적 경비를 말한다. 다만, 인적 경비는 단체의 임·직원에게 대한 보수가 아닌 실비성격의 경비에 한한다.